



## 공정거래관련법에 대한 건의 추진상황

- 본 연합회는 2002. 12. 18.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의 구현을 목표로 공정위에 20개 과제를 건의(공정경쟁 제90호, 2003. 2월)하였으며,
- 2003. 6. 12일에는 CP 도입권고 및 교육이수명령제, 공정거래진흥공단을, 그리고 2006. 4. 12일에는 분쟁조정제도 범위 확대, 심사절차 종료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어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한 상황을 정리하여 회원들이 공정거래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### I. 기추진 사항

과제명	건의내용	추진사항
1.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	·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	· 위반행위 관련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개정(2004.4.1 과징금 부과시 개정)
2.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 폐지	·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 폐지	· 범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공표요건을 강화(2006.7.19. 공표지침 개정)
3. 손해배상제도 개선	· 공정위의 심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선포정규정을 완화	· 시정조치 선포정규정 폐지(2004.12.31. 공정거래법 제57조 개정)
4.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완화	· 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(MMF)을 매입하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	·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개정(2003.6.3. 내부거래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개정)
5.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완화	· 합작회사인 경우 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하향조정 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산정시 공동경영 합작사 지분을 합산토록 관계법 규정 개정	·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을 요건을 완화(30%→20%) · 손자회사가 100%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공동출자 법인의 지분을 30% 이상 보유하는 경우 등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(2006.12.18. 입법예고)



과제명	건의내용	추진사항
6.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 제도 개선	· 제19조제5항의 「경쟁제한성」 표현을 삭제하고 외형의 일치와 합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공동행위를 추정하는 사실상 추정제도 도입	· 경쟁제한성 삭제 및 공동으로 한 것으로 불만한 경제적 이유 또는 사업자간의 접촉이 있는 때 합의 추정토록 개정 (2006.12.18. 입법예고)
7. 공정거래진흥공단 설립	·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자율적인 경쟁풍토의 조성 및 법 집행의 효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「공정거래지원공단」 설치	·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「공정거래진흥원」 설치 (2006.7.20.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)
8. 동의명령제도 도입	·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이 시정조치를 수락(합의)한 경우 심판절차를 생략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	· 심사관과 피심인의 협의(안)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하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 (2006.12.18. 입법예고)
9. 분쟁조정제도 범위 확대	· 당사자간 분쟁 성격의 사건에 대하여 민간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범위반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	·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의함이 타당한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 (2006.12.18. 입법예고)
10.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	·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 산하로 이관하여 사건처리와 피해구제(분쟁조정) 연계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충	·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인사·감독·예산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(2006.8.29. 소비자보호법 개정)

## II. 미정 사항

과제명	건의내용
1.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 개선	· 공정한 「거래」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공정한 「경쟁」으로 변경 · 공동의 거래거절 및 집단적 차별을 제19조 공동행위로 이관 · 거래상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방해를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이관 ·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을 충족토록 재조정



과 제 명	건 의 내 용
2.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도 개선 관련	· 가격남용행위 판단시 비용변동 이외에 동종·유사업종의 표준이익률 또는 표준적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고려 · 시정조치에 영업의 일부 양도를 추가
3.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	·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
4. 예비심판제도 도입	·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앞서 예비심판관으로 하여금 위원회 심결의 일부를 대행토록 위임하는 예비심판제도를 도입
5. CP 도입권고 및 교육이수를 명하는 제도 도입	· 범위반을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을 도입토록 권고하거나 CP를 기도입한 경우는 범위반에 관련된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명령
6. 자율준수제도 활성화	· 자율준수제도 이행 우수업체를 1년 동안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 · 공정경쟁규약 적용대상 행위유형을 불공정거래행위 전체로 확대
7. 기업결합의 제한제도 개선	· 대기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결합을 일시중지시켜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함
8. 심사절차 종료제도 도입	· 조사 및 사전심사 결과 범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계속된 보강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경우 사전심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심사절차를 종료
9. 규제개혁 기능 강화	· 경쟁제한적인 법령 등의 제·개정에 관하여 공정위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통보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 63조를 개정 · 경쟁관련 규제개혁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공정위로 이관
10.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	·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제한제도 폐지
11. 전속고발제도 보완	<1단계> :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불공정거래행위,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 <2단계> : 전속고발제도 폐지
12. 사무처 조직 변경	· 공정위 사무처 조직을 정책파트와 심사파트로 구분하고 국, 과 등 조직형태도 산업별로 개편
13. 공정위 소속 및 위원 임명절차 개선	·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을 일반행정부처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(예:감사원)으로 설치 ·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명절차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각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모든 위원을 상임으로 함